

## (재)부산문화회관 계약직근로자 채용 공고

(재)부산문화회관에서 근무할 계약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8년 01월 12일

(재)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

### ① 채용직급 및 분야

채용분야	직 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직무내용
아카데미 및 기획전시 운영	계약직 (기간제)	1명	2018.2.1. ~ 2018.12.31. (11개월)	· 아카데미 수강생 관리 및 분석·통계, SNS 홍보, 강좌 관리 등 아카데미 운영 전반 · (재)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운영
한슬아트샵 운영	계약직 (기간제)	1명	2018.2.1. ~ 2018.12.31. (11개월)	· 방문고객 응대, 한슬아트샵 작품 설명 및 판매 · 작품 입·출고, 재고관리 및 홍보·고객 관리 등 · 회관운영 관련 행정보조(문서작성 등)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(5~10%)

※ 아카데미 운영직원은 부산문화회관, 한슬아트샵 운영직원은 부산시민회관에서 근무함

### ②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 분	자격요건
아카데미 및 기획전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하거나 채용분야 유경험자</li> <li>· 아카데미 강좌가 있는 야간, 토/일/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</li> <li>· 컴퓨터활용능력(MS-Office, 문서작성)이 원활한 자</li> <li>· 문화예술 아카데미, 전시, 미술에 관심이 있는 자</li> </ul>
한슬아트샵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객서비스 및 판매업무 유경험자</li> <li>· 미술에 관심이 있는 자</li> </ul>

※ 보수수준 :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수준, 부가급여 별도 지급

### ③ 근무시간

아카데미 및 기획전시 운영	한슬아트샵 운영직원
주5일(월~금요일), 1일 8시간 -근무시간: 09:00~18:00	주 5일(수~일요일), 1일 8시간 -근무시간: 13:00~22:00

#### ④ 채용방법

##### ① (1차) 서류전형

- 직무관련 경력, 자기소개서 등 서면심사
  - 직무관련 교육, 경력, 경험 등 평가
- 평가내용 : 5대 평정요소

구 분	직무능력 (경력사항포함)		자기소개	가점 보훈 등
	배 점	정량		정성
10		40		

##### ○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기준

- 1) 평가요소별 합산점수 평균 80점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정
- 2) 심사위원 평가에서 최고/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고 전체 합산 후 평균
- 3)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: ①직무경력 고득점자, ②자기소개 고득점자

○ 응시원서 접수방법 : (재)부산문화회관 채용 이메일([bsculture@bscc.or.kr](mailto:bsculture@bscc.or.kr)) 접수

##### ② 2차 시험 :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  - ▷ 면접을 통한 전문 역량 평가(총 10분 이내)
- 면접 평가 내용 : 5대 평정요소

구 분	직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지식	자기소개	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창의력·의지력·발전 가능성	가 점(보훈장애 등)
배 점	40	30	25	5	5~10

##### ○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기준

- 1) 평가요소별 합산점수 평균 80점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
- 2) 심사위원 평가에서 최고/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고 전체 합산 후 평균
- 3)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: ①직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지식 고득점자, ②자기소개 고득점자

※ 가점 : 응시원서 접수 시 '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'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
(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 적용)

※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본인의 임용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의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수 시험일정

공고기간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전형장소	합격자발표
2018.1.12. ~ 1.23. (12일간)	2018.1.16. ~ 1.23. (18:00마감) (8일간)	서류심사	2018.1.25.	부산문화회관	2018.1.26. 17:00
		면접시험	2018.1.30.	부산문화회관	2018.1.31. 17:00

※ 서류접수 마감시간: 2018.1.23. 18:00까지 이며, 이후 시간은 접수하지 않음

※ 면접시험 시간 등 별도 알림 ▷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 알림

## ⑥ 원서접수

- 접수처 및 접수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접수
  - (재)부산문화회관 전자우편([bsculture@bscc.or.kr](mailto:bsculture@bscc.or.kr))으로 서류 제출
- 제출서류 : 이력서 1부<별지 제1호>, 자기소개서 1부<별지 제2호>
  - ※ 증명서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(졸업증명서,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)
  - ※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 결과 각 1통 원본 제출

## ⑦ 기타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당회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, 응시자의 학력, 성별, 연령 등의 차별적 요소를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(재)부산문화회관(☎607-6024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# 법정 채용 가산점

□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부여

부여대상	부여기준 (각전형별)	비고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 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	10%	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5%	
1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	10%	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
1. 애국지사의 가족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	5%	
1.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.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	10%	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
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	5%	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	10%	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	5%	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.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10%	5.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	5%	
1.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	10%	
1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	5%	특수임무수행자 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20조